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3. 3.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2월 2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2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4년 3월 2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가. 제정이유

-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주한외교관의 외교활동에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며, 주차장법이 2003. 7. 29.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800cc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급지와 관계없이 감면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중 2·3·4·5급지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함.
- 주한외교관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함.
-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급지와 관계없이 감면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체계로 바꾸고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거 본 조례(안)을 수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 면제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89 |
|----------|----|

제출년월일 : 2004. 2. 1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 나. 주한외교관이 서울에서 외교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차문제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다. 주차장법이 2003.7.29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cc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급지와 관계없이 감면토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중 2·3·4·5급지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함.
- 나.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함.
- 다.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급지와 관계없이 감면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제1항
- 나. 합의사항 :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규제심의 : 해당 없음

마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7중 “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를 “급지와 관계없이”로 한다

[별표1]의 <비고>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구청장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13. 구청장은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p>&lt;비고&gt;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u>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u>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이하생략)</p> | <p>&lt;비고&gt;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u>급지와 관계없이</u>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p> |
| <p>&lt;신 설&gt;</p>                                                                                                             | <p>&lt;비고&gt; 12. 구청장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u>2·3·4·5급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u></p>                                  |
| <p>&lt;신 설&gt;</p>                                                                                                             | <p>&lt;비고&gt; 13. 구청장은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하여 <u>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u></p>                                                          |